

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~7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“종류형”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</p>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종류형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C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
<p>제8조(신탁금의 납입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<u>수익증권좌수</u>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,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.</p>	<p>제8조(신탁금의 납입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,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</p>

	처리한다.
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<u>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,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.</u></p>	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<u>당해 수익증권의 종류별로</u>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,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<u>당해 수익증권의 종류가 같다면</u>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.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<u>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</u>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<u>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</u>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C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
<p>제25조(판매가격)</p> <p>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<u>수익증권의 기준가격</u>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<u>수익증권의 기준가격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5조(판매가격)</p> <p>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의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</p>	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</p>

<p>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<u>수익증권</u>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1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(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)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1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[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</u>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[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</u>]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(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)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[<u>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</u>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5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채투자)</p> <p>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<u>수익증권</u>을 매수 할 수 있다.</p> <p>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<u>당해 수익증권</u>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35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채투자)</p> <p>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을 매수 할 수 있다.</p> <p>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
<p>제38조(수익자총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38조(수익자총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만으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</u></p>

<p>②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. ③집합투자업자는 ----- 개최할 수 있다. ④「상법」 -----로 본다. ⑤수익자총회는 ----- 결의할 수 있다. ⑥수익자는 ----- 것으로 본다. ⑦집합투자업자----- 소집하여야 한다. ⑧연기수익자총회의 ----- 본다. ⑨모투자신탁의 ----- 소집하여야 한다. <신 설></p>	<p><u>개최할 수 있다.</u> ③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. ④집합투자업자는 ----- 개최할 수 있다. ⑤「상법」 -----로 본다. ⑥수익자총회는 ----- 결의할 수 있다. ⑦수익자는 ----- 것으로 본다. ⑧집합투자업자----- 소집하여야 한다. ⑨연기수익자총회의 ----- 본다. ⑩모투자신탁의 ----- 소집하여야 한다. ⑪<u>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, 제6항,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“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”는 “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”로 본다.</u></p>
<p>제40조(보수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3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9.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	<p>제40조(보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별</u>로 다음 각 <u>목</u>의 보수율에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<u>1. C클래스 수익증권</u>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2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0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
<p>제43조(기타 운용비용 등)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,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②(생략) <신 설></p>	<p>제43조(기타 운용비용 등)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,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. <u>다만,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.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 ③<u>제1항 단서규정에서 “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”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</u> <u>1.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</u></p>

	<u>수익자총회 관련비용</u>
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2월 10일부터</u> <u>시행한다.</u>